CONFIDENTIAL

취약점점검지침



CONFIDENTIAL



취약점점검지침

문서번호: 가비아-GL-09

개정번호: VERSION 1.2

정보보호
최고책임자

2



<u>개정이력</u>

개정 번호	개정일자	담당자	개정 내용
Version 1.0	2016.10.26	안광해	정보보호책임자 · 최고책임자 승인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및 지침 시행
Version 1.1	2016.12.22	안광해	정보보호위원회 의결 및 개정 지침 시행
Version 1.2	2017.04.21	안광해	이행심사 조치 사항 제14조 예외적용 책임자 변경 기존: 정보보호관리자, 개정: 정보보호최고책임자

3

가비아-GL-09



<u>목 차</u>

제1장 일반사항	. 5
제1조 (목적)	. 5 . 5
제2장 취약점점검	. 6
제5조 (취약점점검 대상)	. 6 . 7 . 7 . 7 . 7
제3장 부칙	. 9
제13조 (시행일)	. 9



제1장 일반사항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(주)가비아 (이하 "회사"라 함)의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 zone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자산의 위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시스템자산을 대상으로 한다.

제3조 (용어정의)

- 1. 취약점: 정보시스템자산 내에서 일반사용자가 권한 상승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거나 비인가 외부자가 특정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보안상의 결함을 의미한다.
- 2. 포트: 일반적으로 포트는 다른 장치에 물리적으로 접속되는 특정한 부위를 말하나, 네트워크에서는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네트워크 메시지를 서버에 전달 혹은 도착하는 출입구를 의미한다.
- 3. 취약점점검: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기 위해 악용되는 시스템의 설계, 구현, 운영, 관리상의 취약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업무를 의미한다.
- 4. 취약점 점검도구: 보안 취약점 점검 기술 중의 한 분야로서 시스템 기반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는 기능을 가진 도구를 의미한다.

제4조 (책임사항)

- 1. 정보보호책임자
 - 1.1 정보시스템자산에 대하여 주기적(연1회 이상)으로 취약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수행·관리·감독을 수행한다.
 - 1.2 점검결과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제거하도록 조치한다.
 - 1.3 취약점 점검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기관이나 외부 정보보호업체를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한다.
 - 1.4 서버, 네트워크, 정보보호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자산에 대하여 해당 관리자는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할 의무를 갖는다.



제2장 취약점점검

제5조 (취약점점검 대상)

- 1. 취약점점검 시기
 - 1.1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취약점점검 대상
 - 2.1 서버: 웹서버, DB서버, NC서버 등의 서버
 - 2.2 네트워크: 라우터, 스위치, IP공유기 등
 - 2.3 정보보호시스템: UTM, 웹방화벽, 방화벽, IPS, IDS 등
 - 2.4 DB: DBMS
 - 2.5 PC(전사 자원 대상): 노트북, 테블릿PC 등
 - 2.6 웹서비스

제6조 (취약점점검방법의 결정)

- 1. 네트워크기반 취약점 점검: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방법에는 자동화된 스캐닝 도구를 사용해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법
- 2. 시스템기반 취약점 점검: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로컬에서 점검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 정보보호업체 등을 통하여 수행할 수도 있다.
- 3. 모의해킹: 애플리케이션 레벨 및 시스템의 취약점을 내부 보안 전문가의 모의해킹을 통해 파악한다.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.
- 4. 취약점 점검도구의 이용은 특정한 소수의 취약점 탐지보다는 다수의 취약점 항목을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제7조 (취약점점점도구의 선정)

취약점 정보, 취약점 데이터베이스, 신규 취약점 업데이트 기능, 취약점 점검결과의 정확성, 취약점 점검결과 보고서, 사용자의 편의성, 한글의 지원, 점검도구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점검도구를 선정한다

6



제8조 (취약점점검 도구)

- 1.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도구
 - 1.1 Nessus 등
- 2. 시스템 취약점 점검도구
 - 2.1 LSOF(List Open File) 등
- 3. 공개 취약점 점검도구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한다.
 - 3.1 http://www.krcert.or.kr 의 자료실 → 보안도구 메뉴에서 다운
- 4. 기타 취약점 점검 도구: 아큐네틱스, 시큐아이스캔 등

제9조 (취약점점검도구 관리)

- 1. 취약점 점검도구의 사용 및 관리는 정보보호책임자로 제한한다.
- 2. 정보보호책임자는 취약점 점검도구의 접근통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,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취약점 점검도구의 취약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.

제10조 (취약점 점검항목의 선정)

정보시스템자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식별하여, 점검에 필요한 취약점은 '안전 행안부 취약점 항목' 기준으로 점검항목으로 선정한다..

제11조 (취약점점검의 수행)

침해사고대응팀은 분석.평가 시 발견된 미 준수 항목 및 정보보호 취약점을 평가한 후 취약점 분석.평가 결과를 취약점과 관련된 각 관리부서에 전달한다. 취약점 분석. 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취약점 분석 평가 수행 일시



- 2. 취약점 분석 평가 대상
- 3. 취약점 분석 방법
- 4. 취약점 점검 내용 및 결과
- 5. 취약점 조치 가이드 라인

제12조 (발견된 취약점의 조치)

- 1. 취약점 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와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한다.
- 2.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해 기존 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, 효율성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분석한다.
- 3. 정보보호대책(방침, 절차, 시스템)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존 대책과 연계하여 효과성, 경제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책과 추진방법을 선정한다.

8

가비아-GL-09



제3장 부칙

제13조 (시행일)

본 지침은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완료일부터 시행된다.

제14조 (예외적용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에서 명시한 내용일지라도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.

- 1. 기술환경의 변화로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
- 2. 기술적, 관리적 필요에 따라 지침의 적용을 보류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
- 3. 기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경우

제15조 (경과조치)

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본 지침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9

가비아-GL-09